

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4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의결주문

- 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보육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체감 높은 보육사업으로 다자녀가구 보육비용의 가계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확산 도모

3. 주요내용

- 비용의 보조 지원규정 확대 (안 제22조제1항)
 -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4개월까지를 생후 36개월까지로 확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6조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4조

나. 예산조치 : 2008년 당초 예산액으로 충당

다.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 (3쪽)
- 2) 입법예고(2008. 4. 2 ~ 4. 21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속초시 조례 호

속초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셋째이후자녀 보육료(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36개월까지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2조(비용의 보조) ①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(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4개월까지) ② (생략)	제22조(비용의 보조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(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36개월까지) ②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규 발췌

【 영유아보육법 】

제36조 (비용의 보조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, 보육교사(대체교사를 포함한다)의 인건비,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,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,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 하여야 한다.

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】

제24조 (비용의 보조) ①법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.

1. 보육시설의 설치, 증·개축 및 개·보수비
2. 보육교사 인건비
3. 교재·교구비
4.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비
5.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
6.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
7.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②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